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62호 정선군 공약실천 관리 규칙 1
- 정선군 규칙 제1263호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21
- 정선군 규칙 제1264호 정선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폐지규칙 · 2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5-870호 정선군 내수면어업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21
- 정선군 공고 제2015-871호 정선군 군관리계획(사북리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공람·공고 21

규 칙

2015년도 제10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 공약실천 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30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규칙 제1262호

정선군 공약실천 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수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실천과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매니페스토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천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하며,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지정, 전체 공약사업 관리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한다.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군수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가능성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2. 공약사업의 실천가능성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의 활용

나. 주민,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③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한 후 정선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는 정선군 홈페이지에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 근거,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다음 분기 개시 후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현지 합동점검을 요구할 경우 관련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에게 추진실적이 저조한 공약사업에 대하여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군수는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선군에 통보 또는 건의 함으로써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정선군 관내 기관·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군민 중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단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단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단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평가시기) 공약이행 평가는 해마다 한 차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마다 한번만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평가방법) 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 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 비율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약이행 단계의 평가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완료: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
2.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중인사업과 공약 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3. 정상추진: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
4. 부진: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
5. 폐기: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사업
6. 장기계획: 공약 당시 대형사업으로 기획되어 공약사업이 임기 중 이행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제13조(평가결과 반영 및 군민의견 수렴) 군수는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들어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정선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군수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참공약 실천)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공약실천의 제도화로 정선군수 공약 사항의 효율적인 실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규칙상 용어 정의 및 관리체계 확립(안 제2조 및 제3조)
- 공약사항의 확정 및 실천계획 수립, 이행, 변경(안 제4조 ~ 제7조)
- 공약사항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안 제9조)
-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평가(안 제10조 ~ 제12조)
 - － 평가시기 및 방법: 연 1회,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 평가결과 등의 공개(안 제14조)

2015년도 제11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30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규칙 제1263호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중 “기획감사실장”을 “부군수”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4월 1일”을 “2월 10일”로 한다.

제4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1호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제42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29-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67호서식 및 제8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9-1호서식〉

고 지 서

년도	회계
고지번호	20xx-xxxx-xxxxxx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편성목)	
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랍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인)	
지출금 반납 입금계좌	
xx 은행	xxx-xx-xxxxxx
(반납자)	귀하

반 납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년도	회계
고지번호	20xx-xxxx-xxxxxx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편성목)	
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반납자) 성명	
지출금 반납 입금계좌	
xx 은행	xxx-xx-xxxxxxxxxx
지출원 귀하	

영 수 증

년도	회계
고지번호	20xx-xxxx-xxxxxx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편성목)	
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지출금 반납 입금계좌	
xx 은행	xxx-xx-xxxxxxxxxx
(반납자)	귀하

〈작성요령〉 주서로 기재

<별지 제67호서식>

자금운용기록부

연월일	적요	기관명	지 불					환 입					잔액	비고
			정기 예금	MMDA	기타 예금	차입 또는 대여	계 (1)	정기 예금	MMDA	기타 예금	차입 또는 대여	계 (2)		

<기재요령> 비고란에는 환입여부를 표시

<별지 제87호서식>

세 입 세 출 일 계 표

회계별	일계 누계	세 입				자 배 금 정 액 ②	세 출				전용 ④	잔액 ①-②-③-④=⑤
		수입액	과오납 반환액	과목경정액등	차액 잔액 ①		지급액	반환액	과목경 정액등	차액 ③		
	일계											
	누계											

자 금 운 용			비 고
예금등 ⑥	환 입 ⑦	공급잔액(⑤-⑥+⑦)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

지출원

<유의사항>

금고에서는 지출원으로부터 통상(송금, 집합)지급명령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이 발행된 것으로 보고 미지급금으로 취급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 바. (생략) 사. 총괄부채관리관: <u>기획감사실장</u> 아. ~ 하. (생략) 2. ~ 6. (생략) ② ~ ⑤ (생략)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 ----- ----- ---. 1.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u>부군수</u> 아. ~ 하. (현행과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u>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u>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u>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u>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 ----- ----- ----- - <u>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u> ----- ----- ----- -----. ② ----- ----- ----- ----- ----- <u>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u> ----- -----

당 실·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무회계과장과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생 략)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 (생 략)

제42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③ 지출원은 제1항에 의한 과오지급에 대한 반납고지서 발부 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반납 받을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생 략)

-----.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현행과 같음)

② -----
----- 2월 10일 -----.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

----- .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1호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2015년 12.31.부터, 출납폐쇄기한 단축(다음 해2.28. → 해당 연도12.31.) 적용에 따른 이월예산의 요구, 확정시기 단축으로 집행의 연속성 제고
- 2015년 11.14.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운용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의무에 따라 공개 표준서식 마련으로 공개의 통일성 제고
 - ※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폐쇄기한),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개정('15.5.13.)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주 요 내 용

- 회계관직(총괄부채관리관) 변경(안 제3조제1항제1호)
 - 효과적인 부채관리를 위하여 부채관리관을 기존 기획감사실장에서 부군수로 상향
- 예산이월 확정 및 장부마감 기한 조정(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
 - 이월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이월요구서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제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 확정
- 이월장부 정리 마감일 조정(안 제34조제2항)
 - 이월장부정리 마감일 조정(기존 4월1일 → 2월10일)
- 서식 신설(안 제42조 제1항)
 - 가상계좌를 통한 지출금 반납 고지서(별지 제29-1호) 신설
- 서식 개정(별지 서식)
 - 자금운용기록부 개정(별지 제67호 서식)
 -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매일 공개에 따른 세입세출일계표 개정(별지 제87호 서식)

2015년도 제10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주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30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규칙 제1264호

정선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폐지규칙

정선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 지 이 유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확정일자 부여 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805호, 2013.12.31.제정)이 2014. 1. 1. 시행되어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을 폐지함.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5-870호

정선군 내수면어업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내수면어업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내수면어업 관리 조례안

2. 제정취지

- 정선군 내수면의 효율적 이용 및 건전한 어업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 어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제정 주요골자

- 제3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 제4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어업협의회의 기능)
- 제11조(내수면어업허가 구역 및 정수)
- 제12조(내수면어업허가 우선순위)
- 제14조(내수면어업허가 어구 제한)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우편 또는 Fax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농업축산과(우편번호 233-701)
- FAX 제출 : 033-560-2599
- 문의전화 : 033-560-2392

붙임 : 정선군 내수면어업 관리 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내수면어업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라 정선군 내수면의 효율적 이용 및 건전한 어업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수면어업(이하 “내수면어업”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내수면어업 관리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관할구역에서 내수면 어업의 허가(육상양식장은 제외한다) 및 신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제3조(구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같은 조 제4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3.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산담당 주사가 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우선순위 결정 및 허가배제
2. 법 시행령(제15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3. 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부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

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질병, 장기여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의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협의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협의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제3장 내수면어업허가

제11조(구역 및 정수) 내수면어업허가 구역 및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마을공동어업의 경우에는 그 허가정수에서 제외한다.

제12조(우선순위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허가 우선순위에서 동일조건의 신청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저소득계층으로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
2. 하천오염방지 및 내수면 생태계 보호(어족자원 보호를 포함한다)에 기여한 사람
3. 의무와 책임감이 강하고 주·야간 불법어업 행위 감시가 가능한 사람
4. 유어활동(낚시를 말한다)동호인 등 지역주민과의 불협화음이 없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 고려대상자는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내수면이 있는 읍·면에 해당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3조(허가기간) 내수면어업 허가기간은 2년으로 하되, 동일구역 내 후순위 신청자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은 제한되며, 순환제를 실시한다.

제4장 내수면어업허가 제한

제14조(어구의 제한) 부령 제7조에 따른 내수면어업허가 규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공익을 위한 제한) 군수는 공익을 위하여 내수면어업을 제한할 경우에는 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선군 내수면어업허가 대상지역 및 허가정수
(제11조 관련)

구간별	대상수계		인원	비 고
	읍·면	위 치		
계	4개읍면		22명	
제1구간	정선읍	광하교 ~ 봉양6리(세대)	2명	
제2구간		봉양6리(세대) ~ 덕송취수장밀	2명	
제3구간		덕송(이절) ~ 문곡보밀	2명	
제4구간	북평면	문곡보위 ~ 남평교(검문소)	2명	
제5구간		남평교(검문소) ~ 장열취수장밀	2명	
제6구간	여량면	당너머 ~ 아우라지철교	2명	
제7구간		아우라지철교 ~ 새치보밀	2명	
제8구간		아우라지정자 ~ 구절리	2명	
제9구간	임계면	봉정보위 ~ 구미정	2명	
제10구간		구미정 ~ 봉산(합수거리)	2명	
제11구간		봉산(합수거리) ~ 덕암리	2명	

[별표 2]

정선군 내수면어업허가 규모 및 방법
(제14조 관련)

구분	자망	연승	패류채취	낭장망, 각망	투망	통발
신고					1구	적정량
허가	1구/50M	1구/200M	형망 : 2통 손틀 : 1구	5통		

관계법령 발췌

제10조(우선순위) 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른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內水面漁業契), 법인과 그 밖의 단체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 순위를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이 법 또는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어장 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특별자치도의 경우 시·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 중인 특별자치도·시·군·구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①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자는 그 위치에서 하천 전체 물흐름의 평균수심 이상인 장소를 선택하여 하천 전체 물흐름 폭의 5분의 1 이상을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역(水域)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법」 제39조에 해당하는 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댐을 설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어류산란장·번식시설의 설치, 치어 방류 등 어족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댐의 특성이나 주변의 지형 및 여건이 어도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수산에 관한 국공립 시험·연구기관에 어류의 서식상태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회유성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은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어업 제한의 기준·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협의 절차, 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5-871호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2번지 일원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5일

정 선 군 수

1. 사업개요

가. 건 명 :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나. 위 치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2번지 일원

다. 면 적 : 97,466㎡(변경없음)

라. 주요변경내용 : 기반시설(도로, 녹지)정비를 통한 지역 주민의 교통 환경 및 정주 환경 개선

2.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3. 공람장소 및 기간

가.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사북읍사무소

나.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이상

4.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실음 생략

5.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면 : 실음 생략

6.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및 사북읍사무소로 서면 제출

7.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와 사북읍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건축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